



제 428회 국회 (임시회)
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목적·유예 사유 명시 강화〉
■ 서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515호)

2025. 8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 개관	3
2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목적·유예 사유 명시 강화	5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서천호의원 등 11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다. 회부연월일 : 2025. 7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.

그런데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,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

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, 수사 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(안 제83조의2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 개관

‘통신이용자정보’¹⁾ 제공 제도는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, 수사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로써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²⁾에 근거를 두고 있음.

현행법상 ‘통신이용자정보’에는 이용자의 ① 성명, ② 주민등록번호, ③ 주소, ④ 전화번호, ⑤ 아이디,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됨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상 ‘통신이용자정보’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, 통신일시 및 발·착신 번호 등 구체적인 통신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상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³⁾와

1) 2023.12.29. 개정 전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서는 “통신자료”라 칭함.

2) 「전기통신사업법」

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제청장 및 지방국제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0조제1항·제3항·제4항의 범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“통신이용자정보”라 한다)의 열람 또는 제출(이하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”이라 한다)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성명
2.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
3. 이용자의 주소
4. 이용자의 전화번호
5. 이용자의 아이디(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)
6.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

3) 「통신비밀보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1. “통신사실확인자료”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.
 - 가.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
 - 나. 전기통신개시·종료시간
 - 다. 발·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
 - 라. 사용도수

구분되는 개념임.

‘통신이용자정보’의 경우 법원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수사기관 등의 실무적인 협조요청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,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.

< ‘통신이용자정보’와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의 비교 >

구분	통신이용자정보	통신사실확인자료
법적근거	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3항	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, 제13조, 제13조의2 등
제공자	전기통신사업자	전기통신사업자
제공범위	이용자의 인적사항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아이디(이용자 식별번호), 가입일 또는 해지일	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 - 가입자의 통신일시, 통신개시·종료시간, 발·착신 통신번호, 사용도수, 컴퓨터 통신·인터넷 로그기록,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,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
요청주체	법원, 검사,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	법원, 검사, 사법경찰관, 정보수사기관의 장
사전절차	-	- 검사·사법경찰관: 법원 허가 - 정보수사기관: 고법수석부장판사 허가
사후절차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- 가입자에게 통지(23.12.29 개정)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- 가입자에게 통지

마.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

바.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

사.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

2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시 목적·유예 사유 명시 강화

법률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,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통보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.

이에 따라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대상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, 수사기관 등의 이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83조의2 제1항).

현행	개정안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,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(이하 “수사기관 등”이라 한다)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(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)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	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1.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<u>사용 목적</u>	1. ----- -----구체적 사용 목적(해당 당사자와의 연관성,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사유, 사건의 개요 및 진행 경과, 통신이용자정보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)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유예 사유 및 기간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□ 검토의견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의2제1항4)에서는 검사, 수사관서의 장 등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, 통신이용자정

4)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,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(이하 “수사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(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)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
2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
3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

보 제공을 받은 자 등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, 통지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, 통지 유예가 있었던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로 통지 유예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통지 대상 당사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음.
- 동 개정안과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, 통지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로서 당사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요청할 때 보다 신중하게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,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음.
- 다만,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범죄 수사나 공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. 따라서 통신조회 통보 대상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, 수사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.
- 범죄 초기 수사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

지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, 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3년 상반기에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총 2,418,668건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었으며, 제도 시행 이후인 2024년 상반기에는 1,361,11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아직 범죄 수사 초기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통신이용자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이처럼 범죄 수사 초기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해당 정보의 당사자와의 연관성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사유, 사건의 개요 및 진행 경과, 통신이용자정보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, 수사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기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, 많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시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여,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예를 들어, 범죄 사실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이용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연관성, 사건의 개요 및 진행 경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될 경우, 해당 이용자가 수사 경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<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(2022~2024년 상반기)>

(단위: 건)

구 분		2022년	2023년		2024년
	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
검 찰	전화번호 수	745,746	739,590	739,802	263,546
	문서 수	75,434	80,371	80,643	52,946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9.9	9.2	9.2	5.0
경 찰	전화번호 수	1,398,423	1,598,713	1,402,402	1,033,515
	문서 수	407,696	457,975	436,099	394,807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3.4	3.5	3.2	2.6
국정원	전화번호 수	7,054	10,563	10,753	9,595
	문서 수	1,017	1,311	1,288	1,287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6.9	8.1	8.3	7.5
공수처	전화번호 수	94	1,665	797	250
	문서 수	42	177	87	53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2.2	9.4	9.2	4.7
기타 기관	전화번호 수	65,242	68,137	58,888	54,212
	문서 수	28,819	30,976	30,675	27,751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2.3	2.2	1.9	2.0
합 계	전화번호 수	2,216,559	2,418,668	2,212,642	1,361,118
	문서 수	513,008	570,810	548,792	476,844
	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	4.3	4.2	4.0	2.9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‘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
제공 등 현황 발표’, 2024. 12. 27.

-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목적에 있어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, 통지 및 통지 유예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,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- 종합적으로 보면, 동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. 그러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범죄수사와 공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,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 권리 보장과 수사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.

문 의 처

02)6788-5225
